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지원 기본 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지원 기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4년 3월 20일

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 인천시민 전체 중에 공동주택(아파트)에 거주하는 시민이 50%를 넘는 상황에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공동주택입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시 차원에서 종합적인 관련 정책 추진이 필요
- 또한 그동안 공동주택이 사유지로 분류됨으로 인해 자치단체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의 사각지대가 되어 불합리한 상황에 놓여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고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는 시에서도 예산을 확보하고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
- 따라서 공동주택의 공동체 활성화 및 관리 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시장은 공동주택 입주자들이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되도록 지원하며, 공동주택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안 제4조)
- 시장은 매년 공동주택 관리·안전 및 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안 제5조)
- 시장은 공동주택의 주거문화 개선과 공동주택 관리의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공동주택의 관리실태가 우수한 단지를 선정할 수 있음 (안 제6조)
- 시장은 공동주택단지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시행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군·구에 지원할 수 있음 (안 제7조)
- 시장은 공동주택단지내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군·구에 지원할 수 있음 (안 제8조)
- 시장은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의 방지를 위하여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군·구에 지원할 수 있음 (안 제9조)
-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지원심의위원회를 둠 (안 제11조)
-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업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관리지원센터를 시 도시계획국 소속 상설기구로 설치함 (안 제15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4월 1일(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의회의장(참조 : 시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 전화 032-440-6245, 팩스 032-440-8766, 이메일 : adiosever@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 출 자	해당사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 고
○ 주 소 :			
○ 성 명 :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4. 참고자료

-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지원 기본 조례안 1부.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지원 기본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관리·안전 및 공동체 활성화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공동주택 입주자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주택을 말한다.
2. “관리주체”란 「주택법」 제2조제14호에서 규정한 자를 말한다.
3.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란 「주택법 시행령」 제48조에서 규정한 주택을 말한다.
4. “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이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제외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공동주택 지원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과 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

입주자들이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되도록 지원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동주택 지원을 위한 재원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공동주택 지원 종합계획 등

제5조(공동주택 지원 종합계획) ① 시장은 매년 공동주택 관리·안전 및 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정책 추진을 위한 공동주택 지원 종합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군수·구청장에게 계획 수립을 위해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 시 주민이나 관련단체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전문가의 자문을 거치거나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매년 수립된 지원계획을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우수 공동주택단지 선정) ① 시장은 공동주택의 주거문화 개선과 공동주택 관리의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공동주택의 관리실태가 우수한 단지(이하 “우수단지”라 한다)를 선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우수단지를 선정하기 위하여 10인 이내의 시민단체, 민간

전문가 등을 평가단원으로 하는 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하거나,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단원에 대하여는 수당과 여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우수단지에 대하여 우수단지 인증패를 수여할 수 있다.

④ 우수단지의 선정방법, 평가방법 및 평가시기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공동체 활성화 사업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공동주택단지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시행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군·구에 지원할 수 있다.

1. 입주자대표회의 등 회의공개 시설장비의 설치
2. 공동주택간 갈등해소를 위한 사업
3. 보육·육아시설의 설치 및 개·보수
4. 주민참여형 지역봉사활동 또는 보육프로그램 운영
5.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6. 주민 공동이용을 위한 카페, 강의실 등 다목적용 시설의 개·보수
7. 주민 공동이용을 위한 화장실 유지보수
8. 어린이놀이터 유지보수
9. 공동 실내체육시설의 설치·개선
10.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모에 선정된 사업

11. 그 밖에 공동주택단지 공동체 활성화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8조(관리비용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공동주택단지내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군·구에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하자보수비용의 지원은 해당 공동주택건설 사업주체의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한 시설물에 한한다.

1. 공동주택 단지 내 보안등 전기료
2. 옥외 하수도의 보수 및 준설
3. 경로당의 보수
4. 조경시설의 보수
5. 실외 운동시설의 보수
6. 장애인 편의시설 및 에너지절감시설의 설치·개선
7. 자전거 도로·주차 및 관련 시설 설치·개선
8. 재난안전시설물의 보수·보강
9. 옥외주차장의 증설 및 보수
10. 음식물폐기물 수거용기 등 쓰레기 집하 및 친환경시설, 택배시설의 설치·개선
11. 주 도로 및 보안등의 보수
12. 담장 또는 통행로 개방 및 이에 따른 옥외보안등, CCTV의 설치·유지
13. 그 밖에 공동주택단지내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관리비용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9조(안전관리비용 지원) 시장은 「주택법」 제43조의3에 의한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의 방지를 위하여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군·구에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지원대상 선정) ① 제9조에 의한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으로서 사용검사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하고 군수·구청장이 현지조사 및 구조안전성의 심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다만, 위험정도가 심각하여 계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공동주택은 경과 년 수를 예외로 할 수 있다.

1. 1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2. 300세대 미만으로서 승강기가 미설치된 공동주택
3. 300세대 미만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한다)이 아닌 공동주택
4.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미만인 건축물

② 시장은 군수·구청장이 제1항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 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1.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주택법」 제50조에 따른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

제3장 공동주택 지원심의위원회

제11조(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
2.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공동주택 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업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관리실장 및 도시계획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다양한 의견 표출이 가능한 위원이 균형 있게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인천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인천시의원
2. 관내 공동주택 관련 단체장이 추천하는 자

3. 공동주택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공동주택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제13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 3분의1이상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장 공동주택 관리지원센터

제15조(지원센터의 설치) 시장은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홍보, 상담과 조사 등의 업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관리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시 도시계획국 소속 상설기구로 설치한다.

제16조(지원센터의 기능)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공동주택관리 관련 교육·홍보
2. 공동주택관리 상담(자문)
3. 공동주택 관리실태 조사 및 감사업무 지원
4.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보급
5. 그 밖에 공동주택 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17조(지원센터의 운영) ① 지원센터에는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은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신청에 따라 실시하되 세부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은 시장이 정한다.

제18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공동주택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령 검토 및 발췌사항

관련법령	☐ 주택법 제43조 제9항 ☐ 주택법 제43조의3 ☐ 주택법 시행령 제82조의2 ☐ 인천광역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
관련법규 정비대상	
관련자료	

관련법령 발췌사항

☐ 주택법

제43조(관리주체 등) ①~⑧ “생략”

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8항에 따른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3조의3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1. 제49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제50조에 따른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 주택법 시행령

제82조의2(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 ① 시·도지사는 공동주택단지를 모범적으로 관리한 사례를 발굴·전파하기 위하여 매년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를 선정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선정한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중에서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를 선정하여 표창하고, 공동주택 관리 관련 강의·상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와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의 선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인천광역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위원(이하“위원”이라 한다)의 일비 및 여비(이하“실비변상”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법령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설치된 각종위원회 위원들의 실비 변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 <개정 1982-01-22>

제3조 (일비등) ① 시·군·구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회 위원중,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출석수당을, 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지명을 받아 미리 안전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안전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과 같이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소청심사위원회, 지방세심의위원회 및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3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
2. 기타각종위원회 위원 :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 본 조례 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시장이 매년 공동주택 관리·안전 및 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립하는 공동주택 지원 종합 계획에 의거하여 정해지는 사항이므로 (안 제5조), 현 시점에서 추정하기는 어려워 비용 추계서는 제외함

2. 미첨부 근거규정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하여
비용추계서 미첨부

4. 작 성 자

- 건설교통위원회 정 수영 의원